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6

발의연월일: 2021. 3. 15.

발 의 자:오영환・이규민・권인숙

장경태 · 김승원 · 서삼석

한병도 · 임오경 · 남인순

조오섭 · 김종민 · 김민철

이수진 • 이병훈 • 정청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행자 보호 규정을 두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의 일시정지의무,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서행 의무 등을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파트, 학교의 통행로 등도로 외의 곳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2017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6,3 35건으로 이 중 4,185명이 사망하여 1.9%의 치사율을 보였음. 이에 반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는 4,663건의 사고가 발생, 사고의 치사율은 5. 7%에 이르며 이는 도로에서의 치사율 3배 가량에 해당함.

이에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 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7조).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제44조"를 "제27조제6항·제44조"로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운전"이란 도로(<u>제44조</u> ·제	26제27조
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	<u>제6항·제44조</u>
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	
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	
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 33. (생 략)	27. ~ 33. (현행과 같음)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 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
	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
	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
	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